

의안 번호	1399	【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28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29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0. 12.(목)

### 2. 제안이유

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「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- 나.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
- 다.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

### 5. 검토의견

-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폐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거법규

##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 <법률 제9051호, 2008.3.28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,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.

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, 제34조제1항제15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, 제35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